

신앙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을 발표하면서 이와 유사한 신앙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목적 지침을 마련했으니 사목자와 신자들은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본당 주임신부가 허락하지 않은 사적(개인적)인 '기도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에 관련된 신자들의 모든 모임은 본당 주임신부에게 알려야 하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가계치유'(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되어 이를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와 예물)와 '속죄기도'(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평신도의 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며, 따라서 잘못된 신심 행위입니다. 사목자는 교회가 이를 금하고 있음을 신자들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3. 신앙일탈 행위의 배후에는 항상 금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신자들만의 사적인 모임이나 기도(속죄, 가계치유, 안수, 구마 등)를 빌미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예물(금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형식이라 해도 금전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4. 교회 안에서 신앙과 전례 및 교리를 왜곡하거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기도 및 은사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이비적인 행태이며, 이단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앙일탈 행위 일체를 금합니다.
5. 교회 안에서 위와 같은 신앙 행위가 있거나,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 즉시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사목국)에 알리어 신앙의 일탈 행위와 잘못된 신심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6.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일탈 행위를 한 엄옥순(라파엘라)와 관련된 모든 신자들은 그 기도모임과 신앙 행위들을 즉각 중지하고, 이제 각자의 본당과 가정에서 올바른 가톨릭 신앙과 믿음 안에서 새롭게 생활하도록 명합니다.

2023년 4월 12일

+ 김요태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